「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제 안 설 명

□ 의안번호 제1129호「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은,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주요 개정내용으로는,

○ 정부의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인 사람에게

○ 월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지원수당 신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□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·희생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□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